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정관

제정 2006.12.28.
개정 2009.05.28.
개정 2009.12.29.
개정 2014.02.06.
개정 2019.11.18.
개정 2021.08.0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Foundation(약칭 KOTPA)로 표기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재단은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 전승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2. 전통공연예술의 인력양성 및 연수 등 교육사업
3. 전통공연예술의 창작활동 및 활성화 지원
4. 전통공연예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전통공연예술 기관 ·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전통공연예술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
7. 전통공연예술정보의 수집 · 공유 · 활용에 관한 사업
8. 전통공연예술의 홍보 및 뉴미디어 사업
9.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부대사업
10.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 (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재단 공여이익의 수혜자)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정한다.

제 2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사무국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사무국장 포함)
4. 감사 1인

② 사무국장(상임이사)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 사무국장,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삭제”

④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장이 제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⑤ “삭제”

⑥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임기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를 구성할 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해당하는 자

2. 미성년자

3. 제 8조에 따라 임원 해임이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당연직 임원은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임원이 결원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는 일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 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장, 이사 중에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무국장이 사고 또는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의 직제규정이 정하는 직제순위에 의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임원의 대우) ① 상임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의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임원의 수당, 여비 기타 실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이 사 회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사무국장, 이사로 구성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제1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재단의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이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이사장, 당연직 이사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기본재산의 편입, 변경, 처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실적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제1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요구한 사항
11. 사업에 부대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2. 관련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3.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 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시작 전까지 이사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를 한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 (회의록) ① 이사회의 정기 및 임시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 을 작성하고, 참석 임원 전원이 확인하며 서명·날인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 4 장 재산과 회계

제23조 (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삭제”

③ 재단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1” 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⑤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재단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장기차입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재산의 평가) “삭제”

제26조 (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국고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사업수입,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제27조 (회계원칙) “삭제”

제28조 (회계 연도) 재단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29조 (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삭제”

③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④ “삭제”

제30조 (사업실적 및 결산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결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제31조 (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삭제”

제33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삭제”

제34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5 장 사 무 조 직

제35조 (사무국) 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삭제”

④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⑥ 재단의 취업 · 직제 · 보수 · 인사 · 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6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 하도록한다.

제38조 (저작권의 귀속) “삭제”

제39조 (청산인) “삭제”

제40조 (시행규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국악문화재단 설립 준비팀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재단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김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임기간
이사(당연직)		- 국립남도국악원장 임 용 예 정 자 -	〃
이사(당연직)	박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이사(당연직)	김00	서울 강동구 고덕동	〃
이사(선출직)	정00	서울 동작구 사당동	승인일로부터 3년
〃	황00	서울 동작구 상도동	〃
〃	이00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	김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
〃	황00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3동	〃

〃	이00	서울 종로구 평창동	〃
〃	이00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
〃	이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
〃	김00	서울 강서구 가양동	〃
〃	김00	서울 서초구 우면동	〃
〃	김00	서울 용산구 주성동	〃
감사(당연직)	이00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임기간
감사(선출직)	허 0	서울 서초구 잠원동	승인일로부터 2년
계	17명	이사 15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제4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 명	주요경력	기명날인
김00	○ 현 국립국악원장	김00
박00	○ 현 국립남도국악원장	박00
김00	○ 현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	김00
정00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장	정00
황00	○ 현 서울대 국악과 교수	황00
이00	○ 현 경기민요보존회 회장	이00
김00	○ 현 국악협회 이사	김00
황00	○ 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황00

이00	ㅇ 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이00
이00	ㅇ 현 단국대학교 국악과 교수	이00
이00	ㅇ 현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이00
김00	ㅇ 현 이화여대 국악과 교수	김00
김00	ㅇ 현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장	김00
김00	ㅇ 현 사단법인 국악진흥회 이사장	김00
허 0	ㅇ 현 일신회계법인 대표	허 0
이00	ㅇ 국립국악원 장악과장	이00
16명		

[별지 1]

기본재산목록

재산명	평가액	비고
설립출연금	6,000,000원	금융기관 예치 **(하나은행)**
계	6,000,000원	

부 칙 (2009.5.28)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9)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2. 06)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8)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8. 0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